KOSHA GUIDE

C - 86 - 2018

- (10)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건설현장을 순회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·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11)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(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에 의거 사업주간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정기적으로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실시
- (나) 고위험작업에 대한 세부작업계획 발표, 논의
- (다)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당사 직원, 협력업체 대표자로 구성(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주관)
- (라) 회의 운영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, 결재, 보관
- (12)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금지, 경고, 지시를 위한 안전표지와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13)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유해·위험한 작업에 종사 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, 보호구의 관리 및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14)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가) 혈압 등 기초 건강진단은 채용당일 현장에서 간이건강검진실시
- (나) 특수 건강진단 대상 작업시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
- (15)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 665조(중량의 표시 등)에 의거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(가)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
 - (나)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,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